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2004. 6.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시설개선자금융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5인 이내의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평창군금고에 예치·관리할 수 있도록 정함.
- 나.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금 위탁·관리등에 대하여 필요 한 규정을 정하고, 모범음식점은 차등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평창군공고 2004-98호(제출 의견 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평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식 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평창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의 출납은 평창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식품진 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창군 식품위생업무관련 해당 공무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 ⑤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민원봉사과장

2.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

제10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평창군내에 주소를 두고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위탁·관리)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 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4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유통음식점과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적용) ①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이 행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식품위생법 관련 조문

◎ 식품위생법

제65조 (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22조·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의 귀속방법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시·도지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71조(식품진흥기금) ①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응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삭제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8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39조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6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시·도 및 시·군·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 : 100분의 40
2. 시·군·구 : 100분의 60

제42조 (식품진흥기금사업) ① 법 제71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2.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 2의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검사 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
- 2의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2의4.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 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3.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4. 시·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탁 한 사업
 5. 음식문화의 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6.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 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당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기금의 운용)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용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⑦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6조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①법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제외대상은 별표 15와 같다.

②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영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